

제185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12. 7. 17.(화) 10:00~

조례안 심사보고서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1.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7
4.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10

〈의안번호 제2012 - 52호〉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함(안 제2조의2)
 -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10년)까지로 함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6조제2항)
 -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
 - 기타 ⇒ 그 밖의, 그 밖에
 - 각호의 1 ⇒ 각 호의 어느 하나
 - 규정에 의한(의하여) ⇒ 따른(따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있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나.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2 - 53호〉

거창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확대 및 명확화하여 무분별한 축사 건립을 억제하고,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자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별표)
- 가축사육제한 구역 개정(안 제3조)
 - (1) 전부제한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
 - (2) 일부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외곽에 위치한 가구의 대지 경계선에서 가축 사육시설 예정부지 대지 경계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로서 소·말 100m, 젖소·사슴·양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이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 및 경남도의 조례 권고안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명확하게 하여 축산농가와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 나. 이 조례안은 가구 및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시설을 주거 밀집지역과의 거리를 명확히 하여 주민들과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 시키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생략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가. 군수가 제출한 안은 환경부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환경부의 표준화된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주민의 불편과 사업자의 사업추구 등 양면 모두를 고려해야 하므로 군수가 제출한 안대로 시행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때 새롭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안철우 의원)

- 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국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소·말의 경우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웃 군과 같이 200m 이내로 제한하여 제한지역을 좀 더 강화함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하며,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었음.(강철우 의원)
- 다.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을 지정할 때 돼지·닭·오리의 경우는 주거밀집 지역으로부터 1km 이내로 제한하여 제한지역을 강화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음.(김재권 의원)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2 - 54호〉

거창군 농업인대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거창군 농업인의 궁지와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우수 농업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의 명칭에 관하여 정함(안 제3조)
 - 명칭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으로 규정
-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같은 부문의 업종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우수한 농업기술을 통하여 차별화 되는 경쟁력을 갖춘 사람
 - 농축산업 발전에 그 업적이 탁월하거나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 등으로 농업리더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 본인 농장(사업체)을 기술교육장으로 개방, 운영이 가능한 사람
-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 수상후보자는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읍면장의 추천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 관하여 정함(안 제7조)
-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거창군농업회의소 회장으로 함
 - 위원은 군의회 의원, 농업기술센터 소장, 거창군 농업회의소 부회장, 군내 농업관련 기관단체장, 그밖에 농업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 회의소집 및 의결에 관하여 정함(안 제9조)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사 의결
- 심사기준에 관하여 정함(안 제12조)
- 위원회는 제5조의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 서류 및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
- 시장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
- 시장은 군수의 상장과 핸드프린팅 동판으로 함
 - 수상자에게는 정부의 포상 추천, 정부 또는 도·군 지원사업의 우선 배정 등 특전을 부여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안은 군 농업인의 궁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수 농업인을 발굴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 이 조례안은 "거창군 농업인대상"의 명칭을 정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상토록 함과 동시에 수상자에게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위촉직 위원의 임기가

명확하지 않으며 핸드프린팅 동판 게시는 재고해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선도농업인 육성과 농업인의 궁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

〈의안번호 제2012 - 55호〉

거창군 농업보조금 운영조례안

심사 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12. 7. 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 일자: 2012. 7. 4.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2012. 7.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농업보조금: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농업경영체에 교부하는 자금
 - 농업경영체: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등
 - 보조사업자: 농업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 보조금 총액제: 농업경영체가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
 - 보조금 일몰제: 같은 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
 - 보조사업 사후관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군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

- 일반적인 보조사업,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 공익발전 및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구분하여 정의함
- 보조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농업·농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
 - 농업인 및 농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
 -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 등
- 보조금지원 순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신규 신청자 ⇒ 지원받은 보조금액 적은 ⇒ 친환경 영농정도 ⇒ 짊은 신청자 ⇒ 해당 분야 영농규모가 큰 신청자
- 보조금 지원율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
 - 공익발전 및 농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은 90퍼센트 이내
- 보조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농업경영체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선정단계 ⇒ 실행단계 ⇒ 완료단계
-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건축시설은 10년
 - 장비 및 그 밖의 시설물은 5년
 -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통상적인 내구연한을 적용
- 보조금 총액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
- 농업인은 7천만원
 - 농업인단체는 1억5천만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5억 원
- 보조금 일몰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농업인에게만 적용, 적용기간은 처음 지원받은 해부터 3년간
 - 농기계의 경우에는 해당농기계 내구연한
- 총액제, 일몰제 적용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하나의 사업이 총액제 금액 또는 일몰제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일몰제를 적용에서 제외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 각종 직불금 및 질병·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계량사업, 품종계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 보조금 제제기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

- 보조금액이 5백만원 미만: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5백만원~1천만원 미만: 3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1천만원 이상 보조사업 포기로 미추진: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제제기간기산일은 제제기간에 대한 적용을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한 날의 다음날부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본 조례안은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속적으로 영농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보조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른 법적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나. 이 조례안은 농업소득창출욕구 강화와 지구온난화 대비 작목의 필요성 등으로 시대적 흐름이 농업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로서 군비를 재원으로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업보조금의 편중지원을 방지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며,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 요지: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해당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해당없음